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38호
2021. 5. 7.(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규 칙(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14호)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15호)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16호) 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17호) 13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58호) 16

고 시(2)

- 사도개설허가 고시(고시 제2021-47호) 18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오정동465-30번지 일원)(고시 제2021-48호) 19

공 고(5)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1-500호) 22
-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공고 제2021-516호) 23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1-524호) 28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중리동229-9번지 일원)(공고 제2021-528호) 29
-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공고 제2021-529호) 30

행정예고(1)

- 2021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공고 제2021-523호) 33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1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증원하여”를 “변경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당직원은”을 “당직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따른 별도 또는 추가 당직원은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보호구역”을 “사무실 및 보호구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당직근무 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근무자의 순찰 범위를 줄여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운전원의 숙직 근거를 마련함
(제6조 및 제10조).

나.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위해 당직근무 시 무인전자경비장치 등이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범위를 확대함(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1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상에 따른 부상 기준(제4조 관련)

1. 행정역량평가 우수 부서 표창

분 야	내 용	시상금 또는 부상
국·시비 확보	10억원 이상	5,000천원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	4,000천원
	5억원 이상~7억원 미만	3,000천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2,000천원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1,500천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000천원
	1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00천원
상사업비 확보	3억원 이상	5,000천원
	1억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4,000천원
	1억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	3,000천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00천원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1,500천원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1,000천원
	1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500천원
기관 표창	대통령 표창	700천원
	국무총리 표창	500천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300천원
구정발전 기여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300천원

※ 일상적인 국·시비 보조사업 등 제외

2. 그 밖의 포상

포 상 명	인 원	포상시기	대 상	시상금 또는 부상	비 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1명	12월	공무원	2,000천원	
모 범 공 무 원	2명	7월, 12월	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름	
으 뜸 공 무 원	4명	4월, 7월, 10월, 12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효 행 공 무 원	1명	5월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 또는 공로연수 공 무 원	미정	퇴직일 또는 공로연수 시작일	공무원	예산의 범위에서	
공 무 원 배 우 자	미정	퇴직 또는 공로연수 공무원 포상 시	공무원의 배우자		
그 밖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포상	연도별 계획에 따름	수시	공무원, 부서	예산의 범위에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표창대상자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신설하는 등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에 따라 공직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개정(2021. 1. 1. 시행)에 따라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을 준용하여 표창 제한사유를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로 표창대상자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제5조).

나. 포상에 따른 부상 기준을 정비함(별표).

- 1) 행정역량평가 우수 부서 표창 시 ‘구정발전 기여’ 분야를 신설하여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구정에 성과를 창출한 부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
- 2) ‘그 밖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포상’ 대상에 부서를 추가하여 공무원 외에 부서를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도별 계획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계획포상제를 통한 포상의 영예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1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결과”를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협력사업비 공개 등)”을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 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 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	
	- 국외 평가기관	(4)	
	- 국내 평가기관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	
	- 총자본비율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6)	
- 고정이하 여신비율	(6)		
- 자기자본 이익률	(5)		
- 대손충당금 적립률	(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19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23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라. 관내 서민대출 지원실적 및 계획	2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소 계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 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I. 일반원칙

1. 점수부여 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평가한 후 세부항목별 금융기관 순위 또는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2. 순위간 점수편차 : 순위 또는 등급간 점수편차는 항목 1, 3, 4의 세부항목은 10%로 하고, 항목 2, 5의 세부항목은 5%로 한다. 다만,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한다.

II.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지역조합은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을 평가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비교하여 평가한다.
- ※ 지역조합은 ‘총자본비율’을 ‘순자본비율’로 평가
-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을 따름
- ※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9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기간별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금리 또는 수익성을 비교·평가한다.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공금예금 금리를 비교·평가한다.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대출금리를 비교·평가한다.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2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 10억 이상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3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기 설치 대수의 순으로 순위를 적용한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비교·평가한다.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방안, 휴일 또는 영업시간 외의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다.

라. 관내 서민대출 지원실적 및 계획(2점)

－ 관내 소상공인, 저신용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실적 및 계획을 비교·평가한다.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수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 능력을 비교·평가한다.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과 금고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을 비교·평가한다.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다.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OCR센터 설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다.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최근 3년 이내 기간 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육성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진흥,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다.(3점)
-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여부를 비교·평가한다.(1점)
-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실적을 비교·평가한다.(1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약정기간 동안 구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비교·평가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이 개정(2019. 5. 9.)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 업무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함(6조).

나.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보고사항을 신설함(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2)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다.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고, 평가 세부항목에 관내 서민대출 지원실적 및 계획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에 탈석탄 선언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평가내용을 신설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1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의 제목“(각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을“(실행단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회 실행단(이하 “실행단”이라 한다) 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실무위원회 위원”을 “실행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을 “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은”을 “단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위원회는”을 “실행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실무위원회”를 “실행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무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를 “실행단 회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실무위원회 명칭이 실행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련 조례에 맞게 “실무위원회” 명칭을 “실행단”으로 변경함(제 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5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순찰 - 5회 이상”을 “순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청사 내부 CCTV 수시 모니터링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당직근무 간 순찰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여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사 내·외의 순찰 생략 가능 구역에 대한 임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제6조).

나.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청사 내부 경계 임무를 추가함(제6조).

사도개설허가 고시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개설허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도개설허가 내용>

허가번호	제2021-01호
사도개설자	하태욱
위 치	용호동 45-5, 용호동 53-2, 용호동 산21-3
목 적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면 적	A = 417.5㎡
허가 규모	총길이=55.8m, 너비=6.0~8.0m
고시 기간	2021. 5. 7. ~ 2021. 5. 28.

끝.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 오정동 465-30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65-30번지, 465-31번지

나. 면적 : 350.2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오정동 465-30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대표자 김영기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23, 3동 1407호(둔산동,청솔아파트)

4. 사업의 시행기간

구분	시행기간	비고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10일	
변경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86일	사유: 동절기 공사불가

5.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 2020. 10. 7.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지 번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용도	세대수	비고
총 계	350.20	59.97	188.22	16.05	다세대주택	12세대	
465-30 일원	350.20	59.97	188.22	16.05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12세대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 (㎡)	
다세대 주택	201호	51.6401	14.2436	65.8837
	202호	40.0380	11.0434	51.0814
	203호	50.1039	13.8198	63.9237
	301호	51.6401	14.2436	65.8837
	302호	40.0380	11.0434	51.0814
	303호	50.1039	13.8198	63.9237
	401호	44.3701	12.2383	56.6084
	402호	27.2001	7.5024	34.7025
	403호	51.2745	14.1427	65.4172
	501호	39.2001	10.8123	50.0124
	502호	27.8801	7.6900	35.5701
	503호	43.1460	11.9007	55.0467

8.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 세대 수 (전용면적 기준㎡)										비고
	계	51.64 01㎡	40.03 80㎡	50.10 39㎡	44.37 01㎡	27.20 01㎡	51.27 45㎡	39.20 01㎡	27.88 01㎡	43.14 60㎡	
총 계	12	2	2	2	1	1	1	1	1	1	
일반분양	-	-	-	-	-	-	-	-	-	-	
임 대	12	2	2	2	1	1	1	1	1	1	

9.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끝.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44번지 및 244-2번지 상 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탄진동 244	12㎡	4m	34.69m	안*모
	신탄진동 244-2	8㎡	4m	8.51m	안*모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시행하는 「2021년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이해관계인 포함)께서는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2021년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
- 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현동 148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 제방정비 L=121m(양안), 전석쌓기 A=484m² 등
- 라. 사업기간 : 2021. 5. ~ 2021. 12.
- 마. 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 보상대상 : 2021년 소하천(배오개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일체

3.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 신청

- 가. 관계도서 : 열람 장소에 비치

나.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1. 5. 7. ~ 2021. 5. 20. / 14일

다.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 042-608-5223)

라. 이의신청 : 열람기간 내 대덕구청 건설에 서면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방법 : 현금보상 (계좌입금)

다. 보상액산정 :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통지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보상금 개별통지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등기 → 보상금 계좌입금

마. 감정평가사 추천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덕구청 건설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사업추진에 따라 열람내용에 일부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7-4	천	311.1	170.4	대덕구					
2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7-6	천	132.4	90.7	대덕구					
3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7-8	도	44.5	4.2	대덕구					
4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8	답	47.2	46.6	대덕구					
5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9	답	313	79.7	정*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0번길 **				
6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9	답	313	79.7	정*복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10번길 21 (비래동, 한신희플러스아파트)				
7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9	답	313	79.7	정*준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133-1 (삼성동, 삼성타운아파트)				
8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9-2	답	272.1	270.8	대덕구					
9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0	답	1,089	84.4	손*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19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9단지)				
10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0-1	답	101.5	43.3	대덕구					
11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0-2	답	241.4	167.8	대덕구					
12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0-3	답	11.7	11.7	대덕구					
13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1	답	1,576.4	112.4	김*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호수로1326번길 ***-*				
14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1-2	답	3.4	3.4	대덕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1-3	답	3.6	3.6	대덕구					
16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2-1	답	9.3	3.9	대덕구					
17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4-5	도	21.4	16.6	대덕구					
18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6	답	1,070	132.9	정*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0번길 **				
19	대전 대덕구 이현동	156-1	답	1,390.6	90.8	대덕구					
20	대전 대덕구 이현동	222-9	답	232.5	5.3	대덕구					
21	대전 대덕구 이현동	223-20	답	80.5	3.4	대덕구					
22	대전 대덕구 이현동	223-9	답	383	346.9	대덕구					
23	대전 대덕구 이현동	707-6	구	3,964.5	603.9	환경부					
24	대전 대덕구 이현동	707-11	도	571	64.2	국토교통부					
25	대전 대덕구 이현동	707-29	구	288.4	4.9	국토교통부					
26	대전 대덕구 이현동	707-30	구	2,505.7	391.7	국토교통부					
27	대전 대덕구 이현동	713-4	도	326.1	17.4	국토교통부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대전 대덕구 이현동	149-2	감나무	H=2.0~3.0m R=8cm	16주	정*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 30번길 **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건축주(행위자)의 확인이 불가능(신원미상)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처분내용 :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2. 공고기간 : 2021. 5. 7. ~ 2021. 5. 24.(17일간)
3. 처분대상

소유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비고
신원미상	신탄진동 119-14	무단증축	조립식판넬구조	30.1	창고	소유자불명

4. 송달내용

신탄진동 119-14번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시정명령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영장을 통지 하오니 2021. 5. 24.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기한 내 미 시정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주택정책과 (담당자 042-608-5143)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21. 5. 7. ~ 2021. 5. 28.
2. 공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별관4층(☎042-608-5374)
3. 주요내용

사업명칭	사업시행위치	사업시행면적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덕구 중리동 229-9, 229-27, 229-28, 229-31, 229-32	700.0㎡	에이치엠 종합건설(주)	지상1~5층, 2개동, 다세대주택 24세대

4. 기타사항 : 관계서류는 공람기간 중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대덕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실시계획승인 및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

대전철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24. 1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일반철도건설사업,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와동, 상서동	연장:2.555km	국가철도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2021.5. 8. ~2021.5. 24.(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1. 5. 8. ~ 2021. 5. 24.(14일간)

나.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102)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m) 설정범위(m)	비고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1	신대동	155-2	답	17.00	17.00			대덕군 회덕면 신대리 165	김현수						
2	신대동	157-8	답	188.00	188.00			대전시 대덕구 와동 364	송정섭	근저당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오목내길 6-13	송홍섭			
3	신대동	157-4	잡	1,443.00	251.00			대전시 대덕구 와동 364	송정섭	근저당권	대전 동구 관암동 202주공아파트 206동 1001호	송홍섭			
신대동 계		3	필지	-	456.00	-	-								
1	와동	산24-1	임	16,264.00	3,281.00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아파트 404동 703호	이재익 외 1인						
2	와동	산23	임	30,446.00	3,349.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 로 448, 404동 703호(전민 동, 엑스포아파트)	이재익 외 1인						
3	와동	산21-4	임	9,760.00	1,593.00			대전시 대덕구 와동 산 21	충주박씨 회덕종종 봉사공위 신자파종 회 외 3인						
4	와동	125	전	83.00	4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 202동 205호(둔산동,국 화아파트)	박영훈						
5	와동	123-1	대	1,431.00	1,431.00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6-16	김희정						
6	와동	산11	임	15,174.00	2,865.00	463.00		서울 마포구 서교동 476-16	김희정				6.63	136.86~157.27	
7	와동	산12	임	37,785.00		1,04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 로 23, 1107동 602호(노은동, 열매마을아파트11단지)	이승찬				29.58	137.94~158.35	등록사항 정정대상
8	와동	산10-2	임	62,380.00		2,911.00		대전시 동구 와동 157	박희오 외 4인				36.50	139.83~160.24	
9	와동	산8	임	42,149.00		729.00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 주공5단지아파트 505동 203호	서정옥 외 3인				11.63	146.04~166.45	
10	와동	산7-1	임	19,835.00		1,289.00		대덕군 동면 신상리 310	박반근				36.04	147.39~167.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토포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m) 설정범위(m)	비고
					수용	구분지상권	임대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와동 계		10	필지	-	12,559.00	6,432.00	-								
1	상서동	산17-7	임	17,407.00		1,382.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48-15	은진송씨 상서파종 중				44.07	149.49-169.9	
상서동 계		1	필지	-	-	1,382.00	-								
대덕구 합계		14	필지	-	13,015.00	7,814.00	-								

2021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각종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 대처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관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응코자함
4. 설치장소: 방범용(14개소 / 17대) 【첨부1】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6. 예고기간: 2021. 5. 7. ~ 2021. 5. 27.(20일간)
7.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8. 의견제출
 - 가. 제출기한: 2021. 5. 27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제출서식: 【첨부2】 참조
 - 라.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 마.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자치분권과(☎ 042-608-6097 fax 042-608-3939)

【첨부1】

대덕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연번	행정동	위 치	개소	대수		비고
				회전	고정	
계		14개소 / 17대	14	8	9	
1	신탄진동	남경마을로11번길 24	1		2	
2	대화동	대화동 35-15 (등대공원)	1		2	
3	법동	계족로677 (대전지방국세청 뒷길)	1	1		
4	덕암동	평촌2길 19	1	1		
5	신탄진동	신탄진로839번길 50	1		1	
6	중리동	중리동392-3(중리11-38)이설 및 고정형 추가	1		1	
7	오정동	오정동489-18 (공주슈퍼 앞)	1	1		
8	송촌동	송촌동553-1	1	1		비상벨
9	회덕동	읍내동363-8	1		1	
10	석봉동	대덕대로1601번길 62	1	1		비상벨
11	회덕동	와동170번지 삼거리	1	1		
12	덕암동	대덕구 덕암동 6-25	1	1		비상벨
13	덕암동	대덕구 덕암동 5-15	1	1		비상벨
14	덕암동	대덕구 덕암동 61-1	1		2	

